# 준해양사고 사례(3분기)

2016. 9.

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(조 사 관)

### ② 발라스트 조작 미숙으로 인한 출항전 경사 발생

## ○○항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중 출항예정시간 30분 전인 18시30분에 선체가 좌현으로 계속 기울고 있음을 이상하게 느낀 일항사가 갑판점검중 CCR에 와서 상황을 확인하였음. 당시 선교에 출항전 항해장비 점검으로 바쁜 3항사를 대신하여 실항사가 ANTI-HEELING SYSTEM을 조작하고 있었으며, BALLAST LINE상 TANK들의 밸브조작 실수로 인하여 선체 경사가 좌현으로 위험상황 더욱더 기울고 있는 상황이였음. 전 개 일항사는 상황 파악 후 밸브 개폐상태 수정하여 경사를 복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발라스트 펌프 2대 기동하여 빠르게 선체 경사를 복구를 시도하였음. 다행히 출항전 가까스로 힐링을 0도로 조정할 수 있었으며 19시 정각 출항에 임할 수 있었음. ㅇ 실항사의 단독 작업(책임사관 부재) 사 $\mathbf{I}$ ㅇ 보고 절차 불명확(이상 발견시 책임자에게 통보) 잠재요인 ㅇ 적절한 인원 미배치(출항 30분전 고려) ㅇ 적절한 인원의 배치(작업통제실 장시간 부재 시 사관급의 직무대리인 배치) ㅇ 책임사관의 지휘, 감독 하에 작업 시행 예방교훈 (재발방지대책) ㅇ 명확한 보고 절차의 식별(기준 점 이상의 이상 발견 시 통보 절차 유지) EX) LIST 1도 : C/O, LIST 2도 : CAPT.

#### 기관사고 위험

#### ② 선박연료유 교체작업 중 주기관 시동 불발

○○항 대기묘지에서 접안작업을 위한 양묘를 위해 기관사용 준비를 하던 중, BOILER 고장으로 M.G.O로 연료유 교체를 한 후 주기관을 운전하였음 이후 도선사가 승선하고 예선 2척의 도움을 받으며, 기관 후진을 사용하였으나, 기관시동 불발로 ○○부두 앞에서 20:23시경 비상투묘를 실시하였음. 위험상황 점검 결과 CYL' LINER의 마모 및 EXH' VALVE의 SPINDLE BUSH 노후 저 개 등으로 압축압력이 형성되지 않아 시동 불발된 것으로 추정되며, 주기관의 ECONOMIZER에 의해 생성된 STEAM으로 가열 된 F.O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어, 또다시 M.G.O를 F.O로 교체하는 과정으로 인해 약 1시간 정도 부두 접안이 지연이 되었음. BOILER 점화불능으로 F.O.대신 M.G.O로 연료유 교체를 하였으나. 주기관의 시동이 되지 않으면서, 부두 또는 접안해 있던 타선과 접촉할 수 있었던 준사고. ○ 보일러 정비 없이 입항 작업 진행함.(RISK가 있음에도 입항시도) 사  $\mathbf{I}$ ㅇ 보일러와 보일러 관련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정비주기. 교환 잠재요인 주기. 배기온도 등 점검소홀 ㅇ PMS에 의한 철저한 정비 점검 (선사에서도 PMS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지원) ㅇ RISK에 대한 대비책 계획(RISK ASSESSMENT 및 RISK 예방교훈 REDUCTION 실시) (재발방지대책) ㅇ 배기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대기오염규제 강화로 인해 입출 항 시 저유황경유나 M.D.O.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

으므로 연료유 분사계통의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경질유

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 필요

## ② 하역작업 중 화물창내 선적된 위험화물 컨테이너에서 연기발생

	하이퐁항에서 양하 작업 진행 중 광양항에서 양하 예정인 20'DG 4.2CLASS 5van을 2번 홀드에 적재하였음. 적재 이후 순찰 중인 갑판수가 홀드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,
위험상황 전 개	즉시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사관은 일항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터미널에 요구하여 즉시 양하하였음. DG 4.2 CLASS 화물은 홀드내에 적재가능 한 화물이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홀드 내 적재하였으나 44도 이상에서 발화할 수 있는 화물으로 하이퐁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홀드 내에서 자연 발화된 것으로 판단됨.
	가능하면 HOLD내 적재를 피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양하항이 광양이라 차항지에서 화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홀드 내에 적재하였음.
	만일 발화직전 상태를 확인 하지 못했다면 해당 화물이 발화되면서 같이 선적된 DG화물까지 연쇄 발화하여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준 사고임.
	o DG(Dangerous Goods) 선적 시 당직 사관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음
사 고 잠재요인	<ul><li>자연 발화 하기 쉬운 성질의 화물이었으나 미리 파악하지 못했음(HOLD FAN을 곧바로 작동하지 않았음)</li></ul>
	ㅇ 자연발화하기 쉬운 성질의 화물이었으나 선적 전 파악하지 못했음
	<ul><li>선적할 화물의 특성 및 지역적, 계절적 영향을 고려 한 후</li><li>이에 알맞은 작업 PLAN을 작성할 것</li></ul>
예방교훈 (재발방지대책)	<ul><li> 위험화물 선적 시 당직 사관의 입회하에 선적하고 선적 이후에도 적절한 간격으로 점검실시</li></ul>
	<ul><li>HOLD내 선적 가능한 DG 화물일지라도 최소발화 온도를 고 려하여 선적하고 선적 시 통풍 팬을 작동시킬 것</li></ul>

## 충돌사고 위험

### ③ 레이다 조작미숙으로 인한 충돌 위험 발생

## 열대소나기가 내리는 해역을 항해중 당직항해사는 레이다의 깨끗한 화면상태를 얻기위해 우설반사 조절장치(Rain clutter)를 조절하였다. 열대소나기 구간을 지난 후 당직항해사는 레이다 스크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어선 한척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. 위험상황 전 개 그때 당직항해사는 자신이 열대소나기 구간을 지났 음에도 불구하고 우설반사 조절장치를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았음을 알았다. 만약 당직항해사가 레이다만을 믿고 항해하였다면 어선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던 준사고 ㅇ 항해 장비에 대한 과신(오차, 반사파 가능성 배제) 사 $\mathbf{I}$ 잠재요인 ㅇ 적절하지 못한 항해장비의 조작 ㅇ 항해장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겨시 철저히 예방교훈 ㅇ 레이더 두 대를 작동 시에는 한 대는 표준상태로 비교하며 사용 (재발방지대책)

ㅇ 당직 항해사와 당직 부원과의 의사소통 활용 및 공유

### ② 연료필터 소제 작업 후 드레인 밸브 미확인

# 2기사는 기관원에게 3번 발전기 연료필터 소제를 지시하였음. 소제 전 2기사가 3번 발전기 연료밸브를 닫고 기관원이 필터를 소제를 실시하였고. 잠시 후 소제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2기사는 기관원이 당연이 드레인 밸브를 닫았을 거라 생각하고 다른 기름누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작업을 종료함. 위험상황 JH 몇 시간 후, 순찰 중이던 3기사로부터 3번 발전기 연료필터에서 전 연료유가 누설된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3번 발전기의 연료필터 드레인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였음. 다행히 3번 발전기는 정지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누설되지 않아 즉시 제거조치 하였음 o 작업 책임자의 관리 소홀 (작업 결과 미확인) 사 고 ㅇ 작업원간의 소통 미흡 잠재요인 ㅇ 작업전 작업절차, 유의사항, 안전사항 등이 협의되지 않음 o 작업전 현장에서 TBM(Tool Box Meeting) 시행 예방교훈 ㅇ 책임자의 더블체크 실시 및 더블체크 확인의 필요성 고취 (재발방지대책)

ㅇ 작업에 대한 간단한 지침서 개발 및 교육